#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36

발의연월일: 2020. 12. 14.

발 의 자: 박범계·조승래·송갑석

김승원 · 신정훈 · 문진석

허종식ㆍ이수진ㆍ어기구

양경숙 • 이용우 • 황운하

의원(12인)

### 제안이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 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 은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 해, 시민재해 사건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법률상 안전·보건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벼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

조치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보았을 때,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른 행정적책임 기조만으로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으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체계로 나아가야 중대 재해를 막을 수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0377호), 박주민의 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의안번호 제2105290호),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안번호 제2105421호), 임이자의원 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6019호)과 같은 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 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 위와 같이 발의되어 있는 각 제정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의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법인, 공무원 등에게 형사처벌이 확대되게 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의 측면에서 해당 의무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는 것이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원칙이므로, 발의되어 있는 각 제정법안들 중에서 일정한 경우 '유해·위험방지의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규정은 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 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 또는 보건 관련 의무를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로 규정하여 사업주 등이 하여야 하는 안전 또는 보건 관련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등에 대한 범죄의 입증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검사가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 중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란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를 말함(안 제2조제7호).

-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위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 관리책임을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제3자 또는 수탁자와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에 처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5조및 안 제6조).
-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에서의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 의무를 부담함(안 제8조).

- 바.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중 제4조, 제6 조 및 제7조를 준용함(안 제10조).
- 사. 이외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처벌사실 등의 공표, 손해 배상책임,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 2.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로 종사자가 사상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라.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 3. "중대시민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 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 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
-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7.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란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를 말하되, 구체적인 의무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 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10.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1. "발주"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건설공

사발주자"가 하는 발주

- 나. 조선사업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고정식 해양플랜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조, 개조, 정비, 변경 등에 관하여, 가목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있는 자가 하는 발주
- 12.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 13. "공무원"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보건조치등 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

를 위반하여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 ⑤ 제4조제1항의 제3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수탁자가 제3조의 의무이행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제3조의 의무 이행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또는 수탁자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본조의 처벌에서 면제한다.
- 제6조(법인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때
  -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 도록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 1. 영업허가의 취소
-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 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 ④ 법원이 제3항제3호의 이행관찰을 병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것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중대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
- 2.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 3.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 4. 공익적 급부제공
- 5.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
- 6. 개선사항의 공개
- 제7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체 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천만 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장 중대시민재해

- 제8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
  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사업
  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등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
  보건조치등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④ 제1항에 규정된 자는 공중이용시설등에서 발생한 결함을 방치할 경우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출 입 또는 사용의 제한·금지나 철거 등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제4항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대시민재해 중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 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 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대시민재해 중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중대시민재해에 관하여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4 조,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보칙

- 제11조(공무원 처벌 특례) 다음 각 호 업무의 결재권자인 공무원(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안 전·보건조치등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 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등 의무와 관련된 감독 및 인·허가
- 제12조(작업중지의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영업정지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자 등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5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5조,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 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한다.
  -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은 「형사소송법」의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다만, 국민양형위원에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④ 재판장은 형의 선고 시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심사결과,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 심사 결과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 제1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 5.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
- 6. 가해자의 재산상태
-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서 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 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